

단은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타 시립예술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 창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관련 條例를 개정하는 등 그 동안 창단을 추진하였으나 미창단된 상태로 있었으나 금년 9월 시립극단 창단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단장 및 단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이르러 현재는 실질적인 창단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만큼 시립극단의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창단되는 시립극단의 운영을 기존 8개 시립예술단체와 마찬가지로 운영주체인 世宗文化會館長에게 권한 위임코자 하는 본 條例의 改正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우리 委員會에서 시립극단 운영의 일원화를 위하여 世宗文化會館長에게 시립극단 운영 등의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본 條例의 改正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本議員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은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동조 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5.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전시품·기타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17조의 “소장은 서울특별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를 제17조제1항으로 하여 “소장은 서울특별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2항으로 하여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제1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호를 제19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의 “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도록·CD·필름 등을 포함하여 외부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를 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도록·CD·필름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신설한다.

4. 소장자료의 대여허가조건, 유·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관 랐

제 2 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1월 2일
2.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 3 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상오 10시부터 하오 6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의 상오 10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p>제 4 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신이상자</li> <li>2. 술에 취한 자</li> <li>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li> <li>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li> <li>5.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li> <li>6.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li> </ol> <p>제 5 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 또는 음주 행위</li> <li>2. 소장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li> <li>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li> <li>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li> <li>5. 소장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li> </ol> <p>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p>제 6 조(관람료) ① 소장은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일반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관람료를 징수한다.</p> <p>③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일반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관람료는 대관자가 결정한다.</p> <p>제 7 조(무료관람) 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li> <li>2. 7세 미만의 어린이·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li> <li>3.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li> <li>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li> <li>5. 기타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li> </ol>	<p>인정하는 자</p> <p>② 소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제 8 조(관람권) 전시 관람권은 적정한 관람인원의 범위내에서 소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관자가 그 종류와 금액을 정하여 발행한다.</p> <p>제 9 조(대표 및 수표)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대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달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대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대관자는 협의에 의하여 미술관에 대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대관 등</p> <p>제 10 조(대관허가) 소장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전시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을 대관허가할 수 있다.</p> <p>제 11 조(대관허가 범위)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허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시설 : 전시실</li> <li>2. 부속설비 : 냉·난방설비 등</li> </ol> <p>제 12 조(사용시간) ① 미술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절기(11월~2월) 09:00~17:00</li> <li>2. 하절기(3월~10월) 09:00~18:00</li> </ol> <p>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p> <p>제 13 조(대관허가 신청) 전시실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술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관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li> </ol>
---	--

<p>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전시의 종류와 명칭</li> <li>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작가 인원</li> <li>4. 대관기간(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포함), 대관장소 및 대관 면적</li> <li>5. 관람료</li> </ol> <p>제14조(대관허가 심사) 소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5조(대관허가 제한)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관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전시실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li> <li>2. 제19조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li> <li>3. 제21조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li> <li>4. 기타 소장이 미술관의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제16조(대관료)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대관료는 전시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p> <p>③ 대관료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징수한다.</p> <p>④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유류는 정부고시가격 기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요율금에 의거 산출 징수한다.</p> <p>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7조(대관료감면) ① 소장은 서울특별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p>	<p>다.</p> <p>②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대관허가 기간 및 장소의 변경) 소장은 미술관의 업무, 기타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허가된 전시실의 대관기간이나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p> <p>제19조(대관허가의 취소)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에 위반한 때</li> <li>2.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li> <li>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li> </ol> <p>제2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소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p> <p>제21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외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p> <p>② 대관자는 제20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 등</p> <p>제22조(소장작품 구입) 소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p> <p>제23조(소장작품 관리) 소장작품은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한다.</p> <p>제24조(소장작품 열람 등) ① 소장은 미술관</p>
---	---

<p>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도록·CD·필름 등을 포함한다.</p> <p>③ 제1항·제2항의 소장자료 열람 또는 대여시 열람자 또는 대여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조치하여야 한다.</p> <p>④ 소장자료의 대여허가조건, 유·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5조(작품기증) 소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료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p> <p>제 5 장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등</p> <p>제26조(위원회)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2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li>2. 미술과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계전문가</li> <li>3. 기타 시장이 미술관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li> </ol> <p>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2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li> <li>2. 미술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3.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li> <li>4. 소장작품 구입 등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p>제29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31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2조(주요사업 자문기구 운영) ① 소장은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제26조 내지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제1항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대관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대관허가를 받았거나 대관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대관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대관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이 조례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p> <p>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중 “무용단 및 오페라단”을 “무용단·오페라단 및 극단”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13. 서울特別市施設管理公園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	--